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조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신성장조달총괄과와 설계예산검토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별첨

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9. 6. ~ 9. 1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기획재정부령 제 호

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조달청과 그 소속기관”을 “조달청 소속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평가대상 조직) <u>조달청과</u>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8 과 같다.	제15조(평가대상 조직) <u>조달청 소</u> <u>속기관</u> ----- ----- -----.

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8]

조달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(제15조 관련)

조직	정원	평가기간
인천지방조달청 경기조달 지원센터	2명 (6급 1명, 7급 1명)	2025년 9월 30일까지